

#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9. 8.

제 출 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○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 심의 대상은 당초 심의 의결된 「미탄면 체육관 건립」과 「봉평 무점정 궁도장 이전」 부지 매입이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 하는 것으로

① 미탄 체육관 건립 부지는 당초 “창리 786-1번지 2,090㎡”를 “창리 613-1번지 외 1필지 2,799.2㎡”로 변경 취득 하고,

② 봉평 무점정 궁도장 이전 부지는 당초 “원길리 296-1번지 외 4필지 10,480㎡”를 “창동리 110번지 외 8필지 19,236㎡” 변경 취득하는 것으로

▷ 전체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필지 수 및 면적은 5필지 9,465.2㎡가 증가 되는 것임.

## 3. 첨부자료

가. 2009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 목록

나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다. 토지대장 열람조서 1부.

라. 사업계획서 각 1부.

# 관계법령 발취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

제10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##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

제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.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공시지가[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(算定)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"개별공시지가"라 한다]로 하고,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.

가. 취득의 경우 : 10억원

나. 처분의 경우 : 10억원

2.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 : 1건당 1천제곱미터

나. 처분의 경우 : 1건당 2천제곱미터